

북한 환경법의 체계에 관한 연구

- 환경보호법을 중심으로 -

김형철*

차 례

- I. 머리말
- II. 북한 환경법의 체계
- III. 북한 환경보호법의 내용
- IV. 남한 환경법의 체계
- V. 남북한 환경법의 비교 및 평가
- VI. 맺음말

I. 머리말

북한은 그들 스스로 ‘공해 없는 나라’¹⁾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공업우선정책에 따라 외형적으로 급속히 팽창한 공업지대의 금속화학공장, 탄광 및 광산 등의 공해방지시설 미비로 인해 대기오염, 수질오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생태계 파괴와 공해병 등 심각한 환경오염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

* 관동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1) 최고인민회의 제7기 5차회의(1986.4.7)에서 부주석 리종옥은 연설을 통해 북한은 “공해 없는 나라, 공원 속의 도시, 인민의 지상낙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공해를 철저히 막는 것이 국가 활동의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함으로써 북한에서도 환경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했다.

려지고 있다. 더욱이 공해방지를 위한 자본력, 기술의 절대부족으로 오염방지 대책마련이 전무한 상태라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증시키고 있다.²⁾ 북한의 환경과 관련된 문제와 현황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 이외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은 환경정보도 체제수호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대외적인 유출이나 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환경실태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일부 탈북자의 증언과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있는 인사들이 작성한 자료 그리고 북한의 산업 및 국토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북한의 환경오염과 자연파괴가 의외로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더불어 아시아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을 비롯한 일부 동북아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환경문제'³⁾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환경오염문제는 지리적, 기후적 특성으로 보아 역내 국가 간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이 지역의 광역대기오염 문제, 해양수질오염문제⁴⁾ 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남북한 간 환경과학기술협력과 정보의 상호교환, 환경감시의 협조가

2) 이하 <http://www.enn21.com/nkenv/nkpol.htm>. 참조.

3) 환경문제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풀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3면. 이러한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입법이 달성해야 할 과제의 하나라 할 것이다. 류지태·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05, 2면.

공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하고 있고, 각 분야간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오늘날의 환경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는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① 상호관련성, ② 시차성, ③ 탄력성과 비가역성, ④ 광역성, ⑤ 이해관계 조정 필요성, ⑥ 국가 역할 증대성 등을 들 수 있다. 박군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6, 3면 이하.

4) 최근 발생한 '충남 태안군 앞바다 유조선 기름유출사고'(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30분경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홍콩선적 14만6천t급 유조선 '헤베이 스프리트'와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1만1천800t급 부선이 충돌하면서 유조선 왼쪽 오일탱크 3개에 구멍이 나 1만5천t의 원유가 해양으로 유출)를 들 수 있다. 환경재앙으로까지 불리는 이 사고의 처리과정에 주변국 일본, 중국은 물론 미국 등과의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유감스럽게도 정작 북한과의 공조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실정이며, 다각적인 환경법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원론적인 환경문제를 넘어서 예를 들어, 북한은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을까? 북측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강조해 온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한낱 구호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북한의 기존 환경법 체계 내에서 핵무기 개발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등등의 민감한 사안이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환경문제와 관련되어 특히 남북한 간의 관계 역시 고려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한은 다른 이념과 체제 하에서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남한은 1990년대부터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오고 있다. 반면,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여러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환경개선 투자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형편에서 한편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대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개발 가능한 한반도의 환경을 유지하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남북 환경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 분야의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이제는 환경정책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환경법적인 관점에서도 북한 환경법체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⁵⁾ 즉 오염된 한반도의 환경은 인간이나 동식물에 막대한 환경비용⁶⁾을 유발하고 또 이를 복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남북한 모두 오염방지대책 등 체계적인 환경정책의 추진뿐 아니라, 환경법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한 사전에 대비하고 사후에라도 환경문제를 법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뒷받침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우

5) 북한의 환경법에 대하여는 1990년대 초반의 몇몇 연구 정도가 있으며 예를 들어 오석락, “북한의 환경법”, 『환경강연집』, 1994, 51면 ; 윤기관, “남북한 환경정책, 환경법체제 및 환경협력방안”, 『통일문제연구』20호, 1993, 236면 참조. 이 밖에 북한의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법학보다는 주로 환경정책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6) 환경비용 문제에 대하여는 고현옥/노상환, “통일을 대비한 남북환경협력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동북아연구』제5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0, 207면 이하 ; 고현옥/노상환, “통일을 대비한 남북환경협력방안 -환경협력비용 조달방안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제7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2, 87면 이하 참조.

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문제라 할 것이다.

북한 환경법을 알아보는 데 있어 공식적으로 말하면 남한법은 ‘대한민국법’이고 북한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법’이지만 일반적 용어관례상 남한법, 북한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북한법이란 개념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한국법(Korean Law)이라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법(Socialist Law)이라는 법계 내지 법문화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⁷⁾

북한은 기본노선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경제 여건이 여의치 않아 환경보호정책보다는 경제개발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 국가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환경정책 전반을 뒷받침하는 법제로서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법 중 비록 다분히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 실효성이 의문시되기는 하나, 북한 환경법 체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환경법 문제에 대한 연구는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제한된 정보로 인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고,⁸⁾ 내용 역시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북한의 환경보호법을 중심으로 북한의 환경법제 전반의 체계와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고, 간단히 남한의 환경법 체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남북한 상호간 바람직한 환경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북한 환경법의 체계

1. 북한의 환경보호정책

북한에서 환경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0년대 제1차 7개년계획에 따라 중공업

7)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6, 1면; 최종고,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 체계”,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과제』, 아사연 법·언론 연구총서 제8권,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4면; 최종고, 『한국법과 세계법』, 교육과학사, 1989.

8) 정희성, 『북한의 환경문제와 통일한국의 환경정책 방향』, 한국환경기술개발연구원, 1996. http://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envinfo&wr_id=1518.

우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화학공업 단지 건설 등 공업규모의 양적 팽창과 광산자원 등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대기 및 수질오염 등 산업공해가 심각해지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정책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환경보호법’을 제정,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그 동안의 각종 시책을 체계적으로 입법화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른 대표적 시책으로는 북한 전역에 자연환경보호구 및 특별보호구 지정, 10여 개의 환경오염관측소 및 기상수문관측소 신규 설치, 평양의 평천오수정화장을 비롯한 10여개의 정화장·침전지 건설,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남흥청년연합기업소·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등 산업시설에 대한 공해방지사설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몇 차례에 걸친 대규모 수해로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실감한 북한은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채택,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일반원칙, 환경보호지도·관리,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재 등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고조는 대외적으로도 나타나 1963년 5월 IUCN(국제 자연 및 자연자원 보존연맹)에 가입하고 UNEP(유엔환경계획)회의에 1982년부터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 12월에는 평양에서 UNDP(유엔개발계획), UNEP 대표 및 환경보호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산업오염의 감시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⁹⁾

2. 북한의 환경관리조직

북한 환경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환경보호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과 감독사업을 강화한다.¹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의

9) 통일부 정보분석국, 『북한개요』, 2000 중에서 발췌. <http://www.enm21.com/nkenv/nkpolicy.htm> 참조.

통일적 지도는 정무원¹¹⁾이 한다. 환경보호에 대한 집체적 지도를 보장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기 위하여 정무원에 비상설 환경보호위원회를 둔다.¹²⁾

이에 따라 북한의 환경보호는 국토환경보호성¹³⁾이 관장한다. 또한 북한은 부문별로 산재된 환경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3년 2월에는 '국가환경보호위원회'를 정무원 산하에 비상설기구로 신설하였으며,¹⁴⁾ 1996년 10월에는 동 기구를 정식 정무원 기구로 개편 '국토환경보호부'를 신설하였다.

1998년 9월에는 사회주의헌법 개정과 더불어 국가권력 개편(정무원 명칭을 '내각'으로 변경)을 단행한 결과 '도시경영부'와 '국토환경보호부'를 합쳐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으로 통합 개편하였다가 1999년 3월에 이를 다시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분리하였다.¹⁵⁾

3. 북한 환경법의 연혁

북한은 환경보호법을 채택하기 전까지는 북한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 이는 6·25전쟁과 전후 복구사업, 중공업위주의 경제정책과 계획 내지 할당된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해의 발생 불문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경제구조라든지 서민생활의 기본 수요인 원료문제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산림의 황폐화를 초래한 경제현실의 단면에 비추어 북한에서는 그동안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⁶⁾

10) 북한 환경보호법 제38조.

11)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있다. 정무원은 주석의 제의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는 총리와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가 임명하는 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 그 밖의 성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12) 북한 환경보호법 제39조.

13) <http://www.enn21.com/cgi-bin/board/buboard.cgi?db=nknews&act=read&>.

14) 북한은 국가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정책을 총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정무원의 산하부서로 추정되나 조직체계는 불분명하다. 북한은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국가환경보호위원회의 명의로 UN에 서한을 보내 이 기구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1994, 637면.

15) <http://www.enn21.com/nkenv/nkenvorg.htm>.

16) 법제처, 『북한법체계요』, 법제자료 제157집, 1991, 560면.

1970년대 후반의 북한의 환경정책은 국토의 개발과 자원의 이용이라는 측면과 함께 환경보호라는 측면도 보이고 있다.¹⁷⁾ 또한 198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인민보건법’을 채택하면서 북한에서도 환경보호라는 용어와 공해방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의 환경보호정책은 주민의 질병의 예방이라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북한에서는 전반적인 농업수준의 낙후와 자동차 보유대수의 저조 등으로 환경에 대하여 과국적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으나 특히 최근에는 광공업지대의 대기, 수질오염과 자연생태계의 파괴 등의 실상이 외부에까지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환경보호법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마치 오래 전부터 자연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¹⁸⁾

김일성 주석의 ‘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라는 전문¹⁹⁾에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조선로동당의 환경보호정책을 철저히 옹호 관철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며 후대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과 풍부한 재부를 물려줄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법적 담보로 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5차회의에서 ‘환경보호법’²⁰⁾을 제정하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북한 환경보호법은 총5장 52조²¹⁾로 되어 있다.

이 법은 제1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3장 환경오염방지, 제4장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제5장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17) 「자원보호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주석명령 제1호(날자 미상)과 이에 근거하여 일단의 자원보호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환경보호사업이 행해졌다. 이에 대한 내용은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628면 참조.

18)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628-629면.

19) 최종고, 『북한법』, 357면.

20) 정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이다.

21) 자료에 따라서는 총5장 51조로 소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최종고, 『북한법』, 363면에 수록된 북한 환경보호법은 제51조와 제52조를 한데 묶어 총51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북한 환경보호법은 자료에 따라 자구상 다소 상이한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나 법조문 역시 그 폐쇄성에 의해 확인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및 제재로 구성되어 있다.²²⁾

김일성 주석의 ‘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라는 전문 말미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은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환경보호법을 제정한 북한이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승인하는 정무원 결정을 채택했다는 북한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의 보도가 있다.²³⁾

1995년 12월 6일 내외통신에 따르면 채택된 시행규정은 총 5장 55조로 되어 있으며, - 환경보호사업의 일반적 원칙, -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 환경오염 방지문제, -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또 공해대책 수립과 주민들에 대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을 환경보호사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북한과 그 주변에서의 핵무기, 화학무기, 세균무기의 개발과 실험, 사용으로 인한 환경과피해를 반대해 투쟁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이 새롭게 제정된 것은 “당의 인민적인 환경보호정책을 관철하며 환경보호법의 요구를 집행해 나가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전체 주민들과 근로자들에 대해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감으로써 나라의 환경보호사업에서 더 큰 전환을 가져 올 것”을 촉구했다.

4. 북한 환경법의 체계

북한의 환경법률 체계는 헌법²⁴⁾ 아래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보호법을 두고 있다. 환경보호법은 자연환경 보전 및 각종 환경오염방지 등 전반적인 사항

22) 최종고, 『북한법』, 356면.

23) 연합뉴스(서울=연합), “북한, 환경보호법 시행규정 채택”(19951206), 게시물번호: 26.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년).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년) 제57조와 동일한 내용이다.

을 포괄하는 종합법이다.²⁵⁾

환경보호법은 제2조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대한 사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개방에 대비하여 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합영법’의 연장선상에서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업활동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법규정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1992년의 ‘외국인투자법’과 ‘합영법시행세칙’, 1993년의 ‘자유경제무역지대법’과 ‘토지임대법’, 그리고 1994년의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과 ‘자유무역항규정’ 등에 나타나는 환경오염 관련 규정 등이 그것이다.

환경보호법 이외에 환경보호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법규는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으며, 중요한 대표적인 법조문으로는 ‘인민보건법’ 제21조, 1987년에 개정된 ‘형법’, ‘외국인투자법’ 제11조, ‘지하자원법’ 제31조 등이 있다.

5. 북한의 환경보호관련 법령²⁶⁾

북한 환경법의 체계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북한에 있어서 환경보호에 관련된 법원(法源)의 주요 목차와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여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²⁷⁾

■ 헌법²⁸⁾

- 생산에 앞선 환경보호대책의 수립
- 자연환경 보존 및 조성

25) 북한 환경보호법은 남한의 경우 환경규제에 관한 법률 중 환경정책의 목적 및 기본이념, 환경 분야에 따른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6) 자세한 내용은 김형철, “북한 환경법의 내용과 특징” 『동북아연구논총』 제8집, 관동대학교 동북아평화연구센터, 2003, 45면 이하 참조.

27) 북한 법규 원문은 <http://www.nkchosun.com/law/law.html?nsflag=N&ACT=list> 참조.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채택).

- 인민들에 대한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 마련
- 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 환경보호법 채택취지와 집행수립
- 환경보호법²⁹⁾
 -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 환경오염방지
 -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 환경피해보상 및 제재
- 환경보호법 시행규정
- 국토계획법³⁰⁾
 - 국토계획의 작성과 비준, 실행에서 제도와 질서 수립
 - 계획적 국토관리에 이바지
- 국토환경보호단속법³¹⁾
 - 국토환경보호질서 위반행위 단속
 - 국토와 자원, 환경보호
 - 자주적, 창조적 생활환경 마련
- 오물청소규칙³²⁾
 - 인접도로의 오물청소의무
 - 배수로 축조 및 수리
 - 청소사업
- 토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 토지법의 채택취지와 실시

29) 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5차회의 채택. 출처 : 통일원, 『북한의 외국인 관련 투자법규집』, 1998.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 회의에서 채택).

31) 1998년 5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회의 결정 제116호로 채택.

32) 1946년 7월 4일(임시인민위원회 보건국 지령).

- 토지법³³⁾
 - 토지를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로 간주
 - 토지소유권
 - 국토건설 총계획
 - 토지보호
 - 토지건설
 - 토지관리
- 산림법³⁴⁾
 - 산림보호체계 수립
 - 산림구역의 동식물보호
- 물자원법³⁵⁾
 - 물자원의 조사, 개발, 보호, 이용에서의 제도와 질서 수립
 -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의 원만한 보장에 이바지
- 바다오염방지법³⁶⁾
 - 바다오염방지사업에서의 규율과 질서 수립
 - 바다 수질과 자원 보호
- 건설법³⁷⁾
 -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고양
 - 건설총계획의 원칙 준수
 - 시공과정에서의 자연환경파괴 금지
- 지하자원법³⁸⁾

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1977년 4월 29일).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1992년 12월 11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4차회의에서 제정).

35) 1997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 결정 제86호로 채택,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36) 1997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 결정 제99호로 채택,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1993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6차회의에서 채택).

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1993년 4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

- 지하자원의 탐사개발이용의 규율과 질서 수립
- 지하자원 개발과정에 국토환경, 생활환경, 동식물의 생태환경 파괴금지
- 인민보건법³⁹⁾
 - 인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
 -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위생규범 엄격 준수
- 문화유물보호법⁴⁰⁾
 - 문화유물보전
 -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
- 역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역사유적과 유물보전관리
-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⁴¹⁾
 - 천연기념물을 보호관리하여 나라의 자연풍치 조성
 - 나라의 명승지를 잘 보호관리하여 자연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선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시관리법⁴²⁾
 - 수도 평양시를 현대적, 문화적으로 조성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장법⁴³⁾
 - 화장을 장려하고, 장례를 간편하게 하며, 자연 풍치와 국토를 보호하는데 이바지
- 외국인투자법⁴⁴⁾

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법령 제14호로 승인).

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1980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4차회의).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1994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에서 법령 제26호로 승인).

41) 199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4호로 채택,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42) 1998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6호로 채택.

43) 1998년 5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5호로 채택,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 금지 또는 제한
- 합영법 시행규칙⁴⁵⁾
 -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과 동식물, 자연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합영기업 창설 금지
-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⁴⁶⁾
 - 인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외국인 기업창설 금지규정 마련
- 자유경제무역지대법⁴⁷⁾
 -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한계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의 투자 금지 또는 제한
 -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수입 금지
- 자유무역항규정⁴⁸⁾
 - 오염행위에 대한 제재
- 토지임대법⁴⁹⁾
 - 임대토지의 천연자원과 매장물 채취이용 금지
 -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임차희망자에게 환경보호, 위생 방역, 소방과 관련한 자료요구
- 금강산관광지구법⁵⁰⁾
 - 환경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

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2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시행규칙(1992년 10월 16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46)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1994년 3월 29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됨)

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3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48) 자유무역항규정(1994년 4월 28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됨).

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1993년 10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50) 금강산관광지구법(200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금지
- 정화처리시설 등을 설치해 자연을 보호하도록 명시
- 관광객 준수사항에서도 환경 손상행위 금지 명시
- 처벌규정 마련
- 원자력법⁵¹⁾
 -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에의 이용

Ⅲ. 북한 환경보호법의 내용

1.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북한 환경보호법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라고 환경보호사업의 의의를 설정하고,⁵²⁾ 환경보호법의 적용대상은 대기와 물, 토양, 생물을 비롯한 환경을 손상, 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⁵³⁾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인민의 의무로서는 다음 사항을

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1992년 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5호로 채택, 199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2호로 수정보충, 1999년 3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19호로 수정).

한편 북한의 ‘원자력법’과 ‘환경보호법’에는 핵무기를 개발할 없도록 규정돼 있다
원자력법 제1조 ; “원자력을 평화목적에 리용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환경보호법 제7조 ;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며 그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는 것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나라의 환경이 파괴, 오염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따라서 북한의 기존 법률체계 내에서는 핵무기 개발이 정당화될 수 없다.

52) 북한 환경보호법 제1조 제1문.

53) 북한 환경보호법 제9조 제1문.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나라의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⁵⁴⁾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서 국가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환경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 시키며 공업을 비롯한 해당 경제부문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데 따라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린다.⁵⁵⁾ 국가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환경을 꾸리기 위하여 환경보호 관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진행한다. 국가는 환경보호의 원칙에서 도시와 마을을 형성하며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산업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⁵⁶⁾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는 것은 공해를 미리 막으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게 공해방지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을 진행하도록 지도통제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도록 한다.⁵⁷⁾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것은 전체 인민의 신성한 의무로서 국가는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국의 강산과 향토를 사랑하며 나라의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여 인민의 환경보호의무도 규정하고 있다.⁵⁸⁾ 국가는 환경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환경보호 과학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⁵⁹⁾

특히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북한 환경보호법은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며 그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는 것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

54) 북한 환경보호법 제1조 제2문.

55) 북한 환경보호법 제2조.

56) 북한 환경보호법 제3조.

57) 북한 환경보호법 제4조.

58) 북한 환경보호법 제5조.

<http://www.enn21.com/cgi-bin/board/buboard.cgi?db=nknews&act=read&>

연합뉴스(서울=연합), “북, 초.중등학교에 환경보호과목 개설”(20000504), 기사물번호: 65.

59) 북한 환경보호법 제6조.

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나라의 환경이 파괴, 오염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한다라고 규정하여 핵무기와 화학무기에 대한 반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⁶⁰⁾ 그러나 북한이 세계 굴지의 화학무기의 생산보유국이라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핵무기의 개발여부와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등에 의한 핵사찰문제와 최근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6자회담 개최를 둘러싼 마찰 등을 고려한다면 이 규정은 북한의 정치적 입장을 호도하기 위한 선언적 조항이라고 판단된다.⁶¹⁾

그 외 북한 환경보호법은 국가는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환경보호분야에서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⁶²⁾ 동법에서 규제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꾸리고 보호관리하는 질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⁶³⁾

2.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북한 환경보호법 제2장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법은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조성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좋은 생활환경을 지어주며 후대들에게 더 아름답고 문화적인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요구’라고 자연환경의 보존 및 조성의 의의를 규정하고,⁶⁴⁾ 모든 기관, 기업소 및 단체와 공민들에게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꾸리고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는 자연환경의 보존 및 조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⁶⁵⁾

환경보호법은 자연환경을 국가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예정하고 있는데,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정부

60) 북한 환경보호법 제7조.

61)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631면.

62) 북한 환경보호법 제8조.

63) 북한 환경보호법 제9조 제2문.

64) 북한 환경보호법 제10조 제1문.

65) 북한 환경보호법 제10조 제2문.

원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⁶⁶⁾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 안에서는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철저히 보호관리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⁶⁷⁾ 국토관리기관과 자연보호과학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변화 상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등록하며 필요한 보호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⁶⁸⁾ 자연보호법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에 대하여 일정한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즉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도시와 마을, 도로와 철길주변, 호수가와 강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 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를 손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⁶⁹⁾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짓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동굴, 폭포, 옛 성터를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⁷⁰⁾

또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할 때 땅이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미리 해당 대책을 세워야 한다. 땅이 꺼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없다.⁷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르는 날짐승과 길짐승은 잡을 수 없으며 북한에만 있거나 이로운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은 해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 없이 잡거나 뜯을 수 없다. 모든 공민은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의 서식환경을 못쓰게 만들거나 희귀한 식물을 마구 캐어 생물계의 균형을 변화시키며 근로자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⁷²⁾

66) 북한 환경보호법 제11조.

67) 북한 환경보호법 제12조 제2문.

68) 북한 환경보호법 제12조 제1문.

69) 북한 환경보호법 제13조.

70) 북한 환경보호법 제14조. 법규해설: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632면.

71) 북한 환경보호법 제15조. 지하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환경보호 문제는 지하자원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다.

72) 북한 환경보호법 제16조. 법규해설 ;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633면.

도시관리기관과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은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 휴식터를 곳곳에 꾸리며 도로, 철길, 건물주변과 구획 안의 빈 땅이나 공동이용장소에 나무나 잔디를 심어 녹지면적을 늘여야 한다. 도시 안과 그 주변에는 환경조성에 지장을 주는 나무를 심을 수 없다.⁷³⁾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정상적으로 향토를 꾸리는 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을 계기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와 마을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짓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할 때에는 주변환경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⁷⁴⁾

3. 환경오염방지

북한 환경보호법 제3장은 공해 등 환경오염방지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기, 수질, 폐기물, 해양오염, 농약, 방사성물질, 소음·진동, 유해물질 등에 관한 구체적 오염방지방안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 것은 공해현상을 없애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국가의 환경보호 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및 소음, 진동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 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및 소음, 진동기준 등 구체적인 집행기준은 정무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⁷⁵⁾

(1) 대기 환경오염방지

해당기관, 공장, 기업소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가스, 먼지잡이 장치와 건물과 시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가시기 위한 공기여과장치를 갖추며 로와 탱크, 배관을 비롯한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

73) 북한 환경보호법 제17조.

74) 북한 환경보호법 제18조. 공원과 유원지의 관리에 관해서는 ‘공원, 유원지관리규정’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동신문, 1990.7.13, 법규해설 ;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633면.

75) 북한 환경보호법 제19조.

은 해당 공장, 기업소와 주민구역 사이에 위생보호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원림을 조성하여야 한다.⁷⁶⁾ 가스, 연기를 기준보다 더 내보내는 룬전기재와 포장하지 않은 물자를 실어 먼지를 일으킬 수 있거나 어지러워진 룬전기재는 운행할 수 없으며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설비는 가동할 수 없다. 사회안전기관과 통운감독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주요거리와 필요한 지역에 현대적인 배기가스 측정수단을 갖추고 룬전기재의 가스, 연기 배출상태를 검증하며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⁷⁷⁾ 해당기관, 공장, 기업소는 배출되는 가스, 먼지, 연기가 특수한 기상조건의 영향으로 대기를 심히 오염시켜 사람 또는 짐승에게 해를 줄 수 있을 때에는 그 배출량을 줄이며 룬전기재의 운행을 조절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특수기상현상을 해당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⁷⁸⁾

(2) 수질 환경오염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오염을 막기 위한 침전지와 정화시설을 갖추고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 물을 정화하며 그것을 회수,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⁷⁹⁾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 물의 침전지, 정화장과 오물, 공업폐설물의 처리장을 바다, 강하천, 호소, 저수지와 먹는 물 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정하여야 한다.⁸⁰⁾ 도시관리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먹는 물을 잘 여과소독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 주변에는 공장, 기업소와 건물, 시설물을 지을 수 없으며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해로운 화학물질을 칠 수 없다.⁸¹⁾

76) 북한 환경보호법 제20조.

77) 북한 환경보호법 제21조.

78) 북한 환경보호법 제22조.

79) 북한 환경보호법 제24조.

80) 북한 환경보호법 제29조 제1문.

81) 북한 환경보호법 제25조.

(3) 해양 환경오염방지

모든 배들은 공화국 영해, 경제수역과 항만, 포구, 갑문, 강하천, 호소, 저수지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 있을 때 기름과 오수, 오물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한다.⁸²⁾ 배운영기관은 배에다 톤수에 따르는 오염방지설비 또는 오수, 오물 저장 용기를 갖추고 해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에 환경보호시설을 갖춘 정형을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⁸³⁾ 항과 포구, 갑문, 부두를 관리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오수와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배의 오수와 오물을 실어내며 바다물과 강물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정화하거나 거두어내야 한다.⁸⁴⁾ 자원개발기관과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 해당기관은 바다자원을 개발하거나 해안공사를 할 때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⁸⁵⁾

(4) 농약 환경오염방지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적으로 금지된 농약은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농약에 대한 독성검사는 위생방역기관이 한다.⁸⁶⁾ 농업지도기관과 농약을 쓰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은 농약이 공기 중에 날리거나 강하천, 호소, 저수지, 바다에 흘러들지 않게 하며 땅속에 농약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살충제를 비롯한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려고 할 때는 해당 환경보호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⁸⁷⁾

(5) 방사능 환경오염방지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방사성기체, 먼지, 버릴

82) 북한 환경보호법 제26조 제1문.

83) 북한 환경보호법 제27조.

84) 북한 환경보호법 제28조.

85) 북한 환경보호법 제26조 제2문.

86) 북한 환경보호법 제30조.

87) 북한 환경보호법 제31조.

물, 폐설물에 의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여과시설과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사능 농도를 배출 기준 아래로 낮추어야 한다. 개방상태의 방사성 물질을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주위환경에 대한 방사성 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조사측정하여 오염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⁸⁸⁾ 방사성물질을 생산, 공급, 운반, 관리, 사용 및 폐기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방사선감독기관 또는 사회안전기관의 방사성물질 취급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선감독기관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⁸⁹⁾

(6) 폐기물 내지 오염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나뭇잎과 오물을 도시주민구역과 주요 도로주변에서 불태우지 말고 정해진 곳에 모아 처리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기관과 해당기관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물을 제때에 실어내야 한다.⁹⁰⁾ 박토장, 버려장, 저탄장, 연재 및 광채처리장은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꾸리며 다 이 용한 뒤에는 흙을 덮어 나무를 심거나 농경지로 이용하여야 한다.⁹¹⁾

(7) 기타

그 밖에 공해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입 및 생산규제, 공장배치, 유해물질 등 몇 가지 환경관련정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오염된 물고기, 과일을 비롯한 식료품과 짐짐승 먹이는 수입할 수 없다.⁹²⁾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거나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주는 설비와 기술은 수입하거나 생산에 도입할 수 없다.⁹³⁾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 생기는 해로운 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를 정상적

88) 북한 환경보호법 제32조.

89) 북한 환경보호법 제33조.

90) 북한 환경보호법 제23조.

91) 북한 환경보호법 제29조 제2문.

92) 북한 환경보호법 제34조 제1문.

93) 북한 환경보호법 제35조.

으로 측정하고 계통적으로 낮추며 해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가 없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해로운 물질은 내보낼 수 없다.⁹⁴⁾ 지방정권기관과 국토관리기관, 해당기관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주는 공장, 기업소를 도시 밖으로 내가며 화물수송 도로와 철길은 주민구역 밖으로 돌리거나 지하에 넣어야 한다. 오염피해를 받는 살림집은 생활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시의 중심에는 공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물동량이 많은 공장, 기업소를 건설할 수 없으며 공해막이 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⁹⁵⁾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식료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과정에 그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⁹⁶⁾

4. 환경보호에 대한 행정조직

북한 환경보호법 제4장은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라는 제명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환경보호사업은 나라의 전반적 지역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며 수많은 노력과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요구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가 환경보호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는 지도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인민대중의 주인다운 자각과 창조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⁹⁷⁾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환경보호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과 감독사

94) 북한 환경보호법 제36조.

95) 북한 환경보호법 제37조.

96) 북한 환경보호법 제34조 제2문.

97) 로동신문, 1986.6.5, 법규해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 대하여 ;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637면.

업을 강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⁹⁸⁾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는 ‘정무원⁹⁹⁾’이 담당한다. 정무원은 그 산하에 비상설 환경보호위원회를 두어 환경보호에 대한 집체적 지도의 보장 및 대책수립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¹⁰⁰⁾ 이와 별도로 환경보호에 대한 감독사업은 국토관리기관과 부문별 환경보호감독기관들인 위생방역기관, 방사선감독기관 및 해당 권한이 있는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¹⁰¹⁾

이들 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정무원은 국가적인 공해감시체계를 세우고 공해감시측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환경변화상태에 대한 측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며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물, 공업폐설물을 처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¹⁰²⁾ 해당 중앙기관과 국토관리기관, 지방정권기관은 환경의 손상과 오염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년차별 계획을 세워 환경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¹⁰³⁾ 국토계획기관과 해당 설계심사기관은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기상수문조건과 지형조건, 해양조건 같은 것을 따져보고 주민지구와 산업지구를 정하며 보건기관, 기상수문기관 및 해당 전문기관과 합의한 기술과제와 설계에 대해서만 심사비준하여야 한다.¹⁰⁴⁾ 준공검사기관과 준공검사에 참가하는 기관은 공해막이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본건설대상에 대하여 준공검사합격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¹⁰⁵⁾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지식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¹⁰⁶⁾ 또한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 및 측정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감독기관과 환경보호측정기관이 요구하는

98) 북한 환경보호법 제38조.

99)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과 더불어 정무원 명칭을 ‘내각’으로 변경.

100) 북한 환경보호법 제39조. 로동신문, 1986.6.5, 법규해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 대하여 ;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637면.

101) 북한 환경보호법 제40조.

102) 북한 환경보호법 제45조.

103) 북한 환경보호법 제42조.

104) 북한 환경보호법 제43조.

105) 북한 환경보호법 제44조.

106) 북한 환경보호법 제46조.

자료와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로동행정기관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노력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¹⁰⁷⁾

5.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

북한 환경보호법은 제5장에서 환경보호와 관련된 민·형사적 책임 등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환경을 손상, 파괴,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국민의 재산에 해를 끼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¹⁰⁸⁾ 환경보호질서 위반으로 손해를 본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은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¹⁰⁹⁾ 환경보호질서를 어겨 국토와 자원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환경보호감독기관이 해당한 손실을 보상시킨다.¹¹⁰⁾ 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권한이 있는 기관은 다른 나라의 배 또는 사람이 북한의 영토와 경제수역에서 대기와 물을 오염시켰을 때는 해당 배 또는 사람을 억류하며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¹¹¹⁾ 환경보호감독기관은 환경보호질서를 어기고 진행되는 대상건설, 공장의 운영과 료전기재의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건물, 시설물을 철수시킬 수 있으며 위법행위를 하는데 쓴 물자, 생산품을 회수한다. 손상, 파괴, 오염된 환경은 원상복구시킬 수 있다.¹¹²⁾ 나라의 환경을 심히 손상, 파괴, 오염시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과 책임있는 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운다.¹¹³⁾

이와 같이 북한 환경보호법은 환경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107) 북한 환경보호법 제41조.

108) 북한 환경보호법 제47조.

109) 북한 환경보호법 제48조.

110) 북한 환경보호법 제49조.

111) 북한 환경보호법 제50조.

112) 북한 환경보호법 제51조.

113) 북한 환경보호법 제52조.

는 있으나 이들의 법적 책임의 구체적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북한은 환경문제를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초보적인 단계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정도가 아닌가 싶다.¹¹⁴⁾

IV. 남한 환경법의 체계

1. 남한 환경법의 체계

현행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제1항은 환경권의 보장과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환경권에 관한 법률유보, 제3항은 쾌적한 주거생활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헌법상의 환경권은 환경법의 해석과 법리형성에 있어서 방향설정 및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¹¹⁵⁾

환경규제에 관한 법률 중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정책의 목적 및 기본이념, 환경 분야에 따른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환경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 이외의 개별 환경법은 기본적으로 오염매체별로 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도 오늘날 중요한 환경법의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의 수단들이 점차 지자체의 조례를 통하여서도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환경보전이나 관리가 지역주민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게 된다.

조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경우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므로 법률과 같이 중요한 법원이 된다. 한편 환경문제의 국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국제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환경법은 국제환경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내 환경법 중에는 환경에 관한 국제조약을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적지 않다.¹¹⁶⁾

환경보호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은 매우 많이 존재하지만, 2007년 12월

114)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573면.

115) 홍준형, 『환경법』, 33면 이하.

116)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34면 이하.

현재 환경부가 직접 관장하는 환경법은 총 44개에 이른다.¹¹⁷⁾

2. 남한의 환경보호관련 법령¹¹⁸⁾

환경법의 생성 및 발전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환경문제는 제3공화국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경제개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기구의 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공해방지법은 전문이 21개조에 불과하여 규제내용이 크게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이 1969년 7월에야 제정되는 등 후속입법이 미비하였고, 경제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당시의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도 없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서 1971년 1월,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한 공해방지법을 대폭 수정·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는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었다. 때문에 소극적인 공해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종래의 공해방지법 체계로는 다양하고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대체하는 환경보전법을 1977년 12월 31일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환경보

117) 환경관계법들은 대부분 '환경부소관법률'에 속한다. 그 밖의 다수 환경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들 역시 환경법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홍준형, 『환경법』, 59면 이하.

118) <http://www.me.go.kr/> 참조.

전법에서는 환경과피 또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뿐 아니라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종합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제도 등을 새로이 도입하였다.¹¹⁹⁾

종래의 공해방지법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공해적 측면만을 대상으로 한데 비하여 환경보전법에서는 그 대상을 자연환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사전 예방적 기능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공해방지법이 현재의 국민보건의 향상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환경보전법은 현재의 국민은 물론 장래의 세대까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다.

1980년에 개정된 헌법에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신설된 이후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환경문제가 심각화·다양화되자, 오염분야별 대책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하에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복수법 체계로 이행하게 되었다.¹²⁰⁾ 즉, 1990년 8월 1일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 법으로 분법화되었던 것이다.

1990년대에는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조직 개편에 의하여 자연공원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2002년 1월 낙동강, 영산강, 금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하류 간의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 등 기존의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위주의 정책을 사전예방중심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낙동강특별법, 영산강특별법, 금강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3

119) 북한의 '환경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환경법 체계는 남한의 과거 '환경보전법'(내지 '공해방지법') 수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20) 복수법 체계는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 대상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규율되어 있는 환경법률들을 통일화시키는 작업이 향후 주요한 입법과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류지태·이순자, 『환경법』, 4면.

년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대책의 추진을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백두대간의 생태계보전을 위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등 3개법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폐지), 악취방지법,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2006년에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7년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환경부가 관장하는 법률은 총 44개에 이르게 되었다.¹²¹⁾ 그 밖의 다수 환경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감안하면 내용은 물론 숫자만 단순비교 하더라도 남한 환경법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V. 남북한 환경법의 비교 및 평가

1. 북한에서의 환경법의 지위

북한에서의 법에 대한 이해는 사회주의법학의 법에 대한 이해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정권 수립 후 변함없이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¹²²⁾

북한 정권이 인민을 법률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한 법률적용의 객체에 불과

121) 실제로 우리나라의 환경관련법령은 일본이나 독일 보다 더욱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본과 독일은 지자체와 지방정부가 상당한 실질적인 환경행정을 하기 때문에 환경관련법령의 분량을 비교할 때에는 지자체 내지는 지방정부의 법령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돈·이창환, 『환경법』, 이진출판사, 2003, 95면.

122)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편, 『법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1, 276면 참조.

한 것으로 이해하여 인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법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주의 대가정론(大家庭論)’¹²³⁾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상은 동시에 법조문 또는 판례의 광범위한 ‘비공개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자본주의국가의 법이 무자비한 부르주아계급의 지배와 착취를 은폐하기 위해 엄청나게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으나 그들의 사회주의법은 계급성을 은폐하지 않으므로 복잡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성문법이 조문수도 적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사고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¹²⁴⁾

그러면서도 법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며,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담보되는 사회적 규범이고 사람들의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관계를 규제한다고 하는 인식¹²⁵⁾은 남한의 법에 대한 이해와 그리 다르지 않다.

최근 들어 헌법을 비롯하여 몇몇 주요 법령의 성문화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모든 법부문에서의 성문화는 아직 요원한 것이 북한의 법현실이다.¹²⁶⁾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당의 정책에 대한 제약이 될 수도 있는 법의 체계적 분류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¹²⁷⁾ 북한에서의 이와 같은 법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할 때 환경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그만큼 법의 역할과 기능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북한 환경법의 특징

우리의 법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주의법 중의 하나인 북한법에 대하여

123) 김일성은 조선조 사대부들의 지배윤리였던 의리를 중시한다는 명목 하에 ‘사회주의 대가정’의 건설을 기치로 삼아 국가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규정하였고, 그러한 사회주의 대가정에서 김일성 자신은 ‘국가의 아버지’가 되었다.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1996, 12면.

124)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1996, 25면.

125) 김억락·한길, 『국가와 법의 이론』,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25면 이하.

126) 북한법에 있어서 부문법이란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그것을 부문별로 전개하고 구체화한 법’을 말한다 :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2면.

127)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 -민사관계법-』, 법무자료 제166집, 1992, 15면.

우리 식으로 법체계를 분류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어찌면 불가능한 일에 대한 시도인지 모르겠으나 우선 북한법 체계에 대하여 북한법을 헌법분야·민법·가족법·형법·재판법규범분야·국가관리법분야·국제법 등으로 분류하는 견해에 의하면, 환경법(환경보호법)은 노동법·토지법·농업협동조합법·해운법·어린이보육교양법·인민보건법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법분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¹²⁸⁾ 또한 ‘북한법령집’¹²⁹⁾에 수록된 법령들과 사회주의법의 일반적 존재양태(혹은 체계)를 종합하여 시도된 분류에 따르면, 환경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으로서 1946년에 이미 175조로 된 ‘사회보험법’을 제정한 이후 보건위생, 환경, 검역, 약사, 생활보호, 재해구조, 사회보험, 사회단체에 관한 많은 법령들이 있는 사회보장법 분야에 속하며, 이 분야는 사회주의국가로서 주체사상의 법적 성과로서 자랑하는 법역이라고 할 수 있다.¹³⁰⁾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환경보호 내지 환경오염의 문제는 그 사회적 관련성의 문제가 비교적 늦게 인식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 이론의 전개가 없었다.¹³¹⁾ 특히 북한의 6·25전쟁과 전후 복구사업, 중공업위주의 경제정책,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제구조, 원료문제의 미해결로 인한 산림의 황폐화를 초래할 정도의 경제현실 등으로 환경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그 일례로 북한에서는 환경법 보다는 오히려 경제 여건의 개선을 증시하는 각종 경제관련 법령¹³²⁾의 활발함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법의 채택 이후 북한은 오래 전부터 자연환경의 보호에 적극적

128) 최달곤, “북한법에 대한 이해와 접근”, 『저스티스』제25권 제1호, 1992, 154면 ; 최달곤, 『북한민법의 연구』, 세창출판사, 1998, 7-8면.

129)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1991.

130) 최종고,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 체계”,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과제』, 아사연 법·인론 연구총서 제8권,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37면.

131)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19면, 최달곤·신영호, 『북한법입문』, 세창출판사, 1998, 86-87면.

132)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대외경제계약법, 대외민사관계법, 대외경제중재법, 토지임대법,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세관법, 외국투자은행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거론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도 환경보호 보다는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경제적 목적이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 관심을 가진 듯이 과장하고,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도 구별되는 특징이다.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호구역과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민의 환경보호의무, 기관·기업소·단체 및 주민에 대한 일정한 오염발생행위의 금지, 공해 등 환경오염방지, 환경보호를 위한 행정조직,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또는 공해측정기준 등 구체적 집행기준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과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상 및 형사상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법과 구별된다.¹³³⁾

이상에서 북한 환경법의 체계에 대하여 환경보호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그들의 주장대로 사회주의국가 주체사상의 법적 성과로서 자랑할 만한 법역 수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반적인 관점에서 남한 환경법 체계와 단순 비교할 때에도 북한 환경법은 우선 실질적 역할 및 기능이 의문시되고, 정치성이 강하며, 법적 책임의 구체적 내용이나 절차가 미흡하고, 세부적 내용 역시 아직은 많이 낙후되어 있는 초보적 수준으로 판단된다.

VI. 맺음말

이상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환경보호법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더 이상 ‘성장의 부수비용’(Nebenkosten des Wachstums)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환경문제가 국가의 최우선과제이자 전 지구적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규율 또는 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¹³⁴⁾

133) 최달곤·신영호, 『북한법입문』, 87-88면 ;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20면.

134) 홍준형, 『환경법』, 4면.

남한의 환경문제 원인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한 것이며, 북한의 경우는 경제난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투자 미흡, 식량난 및 에너지난으로 대별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남북 환경교류협력분야에서는 합리적인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환경보호는 공해 또는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인간의 생존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분야는 인간의 거주공간 그 자체를 다루는 영역이어서 가급적 정치적 이슈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적 환경관에 뿌리를 두고 환경보호 체계를 발전시켰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1992년, 1998년에 개정한 헌법 제57조에 생산에 앞서서 환경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명문화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법제도로는 1986년에 제정된 환경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산업체제나 경제현실 등을 고려할 때 환경정책이 제대로 기능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

환경법적인 관점에서 살펴 볼 때 북한의 환경법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환경법은 북한의 체제와 관련하여 특수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¹³⁵⁾ 그 중에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최근 UNEP(유엔환경계획)에 환경보호법 개정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06년 3월 북한 대표단이 태국 방콕의 UNEP 사무소를 방문해 국제규약에 맞는 환경보호법 개정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했다고 태국 고위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또 북한은 2월 네팔과 부탄에도 관련 대표단을 파견해 삼림 관리와 보호 실태를 시찰했다고 RFA는 밝혔다. 북한이 환경보호법 개정을 위한 시찰단을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에 파견한 것은 국제사회 참여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조짐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RFA는 덧붙였다. 북한은 환경보호법을 제정한 데 이어 1995년 환경보호법 시행규정, 1998년 국토환경보호단속법, 2006년 환경영향평가법을 채택해 국토 및 도시계획에

135)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639면.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 2005년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환경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에 가입하는 등 UNEP와 세계보호연맹 등 국제기구와 함께 지구온난화 방지와 오존층 보호,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활동도 펴고 있다.¹³⁶⁾ 남북한의 법과 제도는 각각의 상황에서 이룩한 성과를 비교하여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앞으로의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환경법 영역에서도 상호이해의 증진을 기대해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앞으로의 환경입법의 과제는 그 체계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공백으로 남아있는 분야의 환경입법을 통하여 보충하는 한편,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환경법의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¹³⁷⁾ 이는 남북한 환경법의 접근에 있어서도 향후의 환경입법의 과제 중 하나로서, 서로 상이한 환경법의 상호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할 입법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에도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36) 연합뉴스(서울=연합), “北 UNEP에 환경법 개정 도움 요청”.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1%ed%95%9c%20%ed%99%98%ea%b2%bd%eb%b2%95&contents_id=AKR20060306000500014.

137) 류지태·이순자, 『환경법』, 333면.

참고문헌

- 고현옥/노상환, “통일을 대비한 남북환경협력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동북 아연구』제5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0, 207면.
- 고현옥/노상환, “통일을 대비한 남북환경협력방안 -환경협력비용 조달방안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제7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2, 87면.
- 김억락·한걸, 『국가와 법의 이론』,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 김형철, “북한 환경법의 내용과 특징”『동북아연구논총』제8집, 관동대학교 동북아 평화연구센터, 2003, 45면.
-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1991.
- 류지태·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05.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1996.
-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6.
-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 -민사관계법-』, 법무자료 제166집, 1992.
-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1996.
-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법제자료 제157집, 1991.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편, 『법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1.
-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1994.
- 오석락, “북한의 환경법”, 『환경강연집』, 1994, 51면.
- 윤기관, “남북한 환경정책, 환경법체제 및 환경협력방안”, 『통일문제연구』 20호, 1993, 236면.
- 이상돈·이창환, 『환경법』, 이진출판사, 2003.
- 정희성, 『북한의 환경문제와 통일한국의 환경정책 방향』, 한국환경기술개발연구원, 1996.
- 최달곤, “북한법에 대한 이해와 접근”, 『저스티스』제25권 제1호, 1992.
- 최달곤, 『북한민법의 연구』, 세창출판사, 1998.
- 최달곤·신영호, 『북한법입문』, 세창출판사, 1998.

- 최종고, 『한국법과 세계법』, 교육과학사, 1989.
-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6.
- 최종고,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 체계”,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과제』, 아사연
법·언론 연구총서 제8권,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 통일부 정보분석국, 『북한개요』, 2000.
- 통일원, 『북한의 외국인 관련 투자법규집』, 1998.
-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 <http://www.enn21.com>.
- <http://www.kfem.or.kr>.
- <http://www.nkchosun.com>.
- <http://www.me.go.kr>.
- <http://yonhapnews.co.kr>.

<Abstract>

A Study on Environmental Law System in North Korea

Kim, Hyung Chul

This article will briefly touch environmental law system in South and North Korea. It will then especially focus on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 Korea. Finally, it will address the need to compare both law systems.

The Republic of Korea is now entering the age of full-scale democratization. Rece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 and North Korea changed dramatically. Korea will develop and implement various environmental policies and legislations to realize environmental soundness, economic efficiency and social balance and to open doors to an era of life-respecting and green nation.

Korea will engage actively i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line with the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rder. In order to confirm Korea's advanced environmental standing in Asia and consolidate a steppingstone for domestic environmental industries and technologies to make inroads into foreign markets, South Korea will establish the new strategy for the preparation of the legal system for proper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 after Korean unification.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 Korea will become more serious, and the need for neighbouring nations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solving common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region will become more important. It will therefore become especially incumbent upon the South and North Korea to jointly manage the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and North Korea will work together with one another in the effort to preserve the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 Korea including joint surveys on ecosystems and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natural environmental preservation areas will be promoted.

A study on comparative legal systems and institu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carried out in order to systematically manage environmental problems of the peninsula. South Korea should promote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 Korea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This paper concludes with a comparison which provides a framework to ensure that legal and policy concerns with environmental problems.

주 제 어 : 환경법 체계, 환경문제, 환경법, 남한, 북한

Keywords : Environmental Law System, Environmental Problem, Environmental Law,
South Korea, North Korea